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. 10. 19 선고 2020가단926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3. 9. 21 선고 2022나103321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. 10. 19 선고 2020가단92697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

담당변호사 전창훈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

담당변호사 곽정훈

변론종결 2022. 9. 21.

판결선고 2022. 10. 19.

주문

1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20. 5. 28.1)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6. 5. 접수 제65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

1) 피고와 D은 C의 자녀이다.

2) C과 피고는 2020. 5. 28.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피고는 2020. 6. 5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. 6. 5. 접수 제65987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나. C과 피고, D 사이의 별도 소송

1) C은 2019.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원고 및 D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1층 상가 E호에 관한 사용수익 상당의 부당이득금 22,423,2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본소를 제기하였고, 원고는 2020.경 위 법원에 C을 상대로, 원고가 C으로부터 구두로 도급받아 2016. 3.경부터 2018. 3.경까지 수행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① 1층 주차장 복원공사(창호 철거, 칸막이 철거), ② 4층 주인세대 거실 화장실 철거 후 재설치공사, ③ 옥상공사(옥상방수, 옥상온실 타일시공), ④ 옥상수도동파 긴급보수공사, ⑤ 각 호실 창호바닥주방현관화장실공사, ⑥ 인허가 철거공사, ⑦ 1층 통신실 설치철거공사, 1층 화장실공사, 보일러공사, 보일러동파방지용 판넬공사, ⑧ 구 F호 판넬공사 등(이하 위 각 공사를

합하여 ‘이 사건 각 공사’라 한다)에 관하여 원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내지 인건비 80,000,00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[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64078(본소), 2020가단 61495(반소), 이하 ‘이 사건 별도소송’이라고 한다].

2)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2. 8. 10. C이 딸인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1층 상가 E호를 무상 사용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D이 이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C의 원고 및 D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,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도급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,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인건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3) 이 사건 별도소송 제1심 판결에 관하여 C과 원고가 모두 항소하여,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.
[인정근거] 다툼이 없거나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, 갑 제1, 5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그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C을 대리한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구두로 도급받아 2016. 3.경부터 2018. 3.경까지 수행하였다. 이에 따라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80,0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청구받자 2020. 5. 28.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하고, 2020. 6. 5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, C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판단

먼저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기 위한 전제로서

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.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을 대리한 D이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, 원고가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여 그 미지급 공사대금이 80,000,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1)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, 원고는 C과 직접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, C을 대리하였다는 D과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, D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는 것에 관한 대리권한을 수여받게 된 경위와 내용, D과 원고 사이에 맺어진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. 따라서 D이 C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, D이 도급인으로서 직접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.

2) D은 2016. 3.경부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일부 부분에 거주하도록 하였고, 이후 원고와 동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 C 역시 2018. 9. 19. D과 통화하면서 원고를 'A서방'이라고 지칭하고, D과 원고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. 이와 같은 D과 원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, 원고와 C을 대리한 D 사이에 통상적인 공사도급 또는 노무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.

3) C과 D 사이의 2018. 9. 19. 전화통화의 전반적인 내용은 C이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의 공사들을 일임하고, D과 가까운 사이인 원고로 하여금 일부 공사를 돕는 것을 용인하고서 추후 인정되는 원고의 인건비 등을 대신 직불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일 뿐, 자신의 대리인인 D을 통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의 공사대금을 사후 정산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.

4) 원고가 전문공사 면허 또는 기술자격을 갖추었거나 기존에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보이지 않는바, 원고가 세면대, 변기, 바닥 타일, 주방타일, 도배, 미장, 전기, 덕트 공사 등 건물 내부

공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시공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라 보기 어렵고,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.

5) D이 C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2016. 4.경부터 2018.경까지 사이에 C 명의 계좌에서 공사비 명목으로 관련 공사업체들에게 송금하거나 D 또는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인출한 금액 합계가 120,000,000원을 넘고, 그 중 D 또는 원고에게 인건비공사비 명목으로 송금인출된 금액만 약 48,000,000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각 공사 중 상당부분이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들에 의해 시공되었고, 실제 시공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미 C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가능성이 크다.

6)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2. 8. 10. 이 사건 별도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,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,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인건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 내지 인건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판사 성하경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.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 대 301㎡

2.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

위 지상

철근콘크리트구조

(철근) 콘크리트지붕 4층 업무시설

제1종근린생활시설

1층 156.43 ㎡

2층 177.31 ㎡

3층 156.43 ㎡

4층 136.69 ㎡

- 끝 -

1)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2020. 5. 28.이다.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 체결시기를 2017. 7. 26.로 기재하였으나, 명백한 오기이므로, 2020. 5. 28.로 정정하여 기재한다(원고도 이 사건 소장 청구원인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계약 체결시기를 2020. 5. 28.이라고 기재하고 있다).